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31호)

2026. 9.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29.
3. 회 부 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의무 신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¹⁾(2020. 2. 4. 개정, 2021. 1. 1. 시행)²⁾에

-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불송치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³⁾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⁴⁾ 또는 공소제기가 지연될 수 있어 피해자 구제도 지연될 우려가 있었음.

2) 해당 개정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양 기관 간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며,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⁵⁾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진술능력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성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신고·진술 여건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⁶⁾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⁷⁾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규정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전건송치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법익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 피해자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참고로, 현재 유사한 취지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6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7호)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229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문 의 처
02)6788-5644